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연구 원 장 종 인*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열 세 자리 번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축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공·사 영역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이 번호 이용에 대해 효율성·편리성과 사생활 침해라는 상반된 논리가 맞서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축적된 정보(Data)로 감시(Surveillance)가 가능한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와 같은 가공할 위험을 야기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개인정보의 상품화 | IV.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응방안 |
| II.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 1.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
| III.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 | 2.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필요성 |
| 1. 식별정보로서의 주민등록번호 | V. 결론: 정보주체로 거듭나기 |
| 2. 연동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 |

I. 문제제기: 개인정보의 상품화

“어느 날 A포털 사이트 직원이라는 분이 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B카드에 가입하겠느냐고요. 그때 밖에서 쇼핑하고 있을 때라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러겠다고 했더니 제 정보를 몇 가지 확인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랑 주소, 그리고 계좌번호... 그리고 얼마 후 신용카드가 집으로 배달되었어요.”¹⁾

신용카드 신청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학원수강, 잡지구독 등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받는다. 전화로도 권하고, 메일을 통해서, 혹은 우편물을 통해서도 권한다. 메일주

연락처: * 디지털미래연구소실 (02) 570-4312, bellwiser@kisdi.re.kr

1) 대학원생 C씨와의 인터뷰에서.

소를 변경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이와 같은 광고는 그칠 줄을 모른다.

한편, 인터넷 서점을 방문하면 컴퓨터가 먼저 알아서 '당신이 관심을 가지는 책은 이것'이라며 소비자에게 그의 취향에 맞을 법한 책을 골라준다.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성향, 소비형태, 직업, 관심있는 부분 등을 미리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에 맞게 상품들을 준비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맞춤 경영을 하는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이 요즘 기업들이 채택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이와 같은 타겟 마케팅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소비자 개인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축적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어제 단 하루의 일과는 가치가 높지 않은 정보일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일주일 간의 일과가 모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일정한 흐름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정보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나하나 개별적인 정보는 큰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산재한 정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보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굳이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 상품개발 전략 등을 생각할 때 소비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RP(전자적자원관리)와 CRM(고객관계관리) 등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소비형태를 분석하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의 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선뜻 기업에 내주려하지 않는다. 기업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고, 소비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들의 정보를 노출시키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주도권은 기업이 쥐고 있는 듯하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회원가입을 거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무료이용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단 소비자들이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지, 어떤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등의 정보도 몰래 수집할 수 있다(사피로, 1999).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먼저 제시하고, 구매실적에 의한 할인혜택을 주며, 경품도 제공하는 등 기업이 소비자에게 효율성과 편리성의 장치를 마련하면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개인정보와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교환하게 된다.²⁾

2) 국내 K통신회사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처음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축적하는 기능을 돕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 고유의 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수집·관리 과정에서 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하며, 개인정보를 모으고 축적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원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런데 국가가 마련한 이 제도가 민간영역인 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도 가속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현행 우리나라 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영역에서 사용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축적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신청할 때, 비행기를 탈 때,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때, 인터넷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할 때, 혹은 어학시험을 신청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심지어 미용실 회원카드나 식당 할인카드를 만들 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아무도 강제하거나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제도적, 공식적 인증/보증'의 소지여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신분관리시스템의 산물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민/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소비자/노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증한다는 하나의 표식이다.

만약 개인에 대한 모든 공적 기록이 없어지거나 조작된다면,³⁾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도용, 혹은 오용된다면, 그 개인은 이 사회에서

사업 소개가 되었을 때 개인정보를 상품화 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사는 지난 1월 시내전화 가입자 240여만 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정보통신부도 이 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중단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으나 K사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급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전화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꺼림칙하던 가입자들도 K사의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 이 결과, K사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 임대업에 동의한 시내전화 가입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건당 1천 원씩 받고 6개월 동안 무제한 이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의 정보를 한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판매실적도 올렸다. K사는 전화 가입이나 이전 신청을 받았을 때, 직원이 신청자 집을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직접 확인한다. 따라서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보다 정확하고,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한겨레신문, 2005년 3월 5일자).

- 3) 현재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5,200여만 명 가운데 10%가 넘는 55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MBC 9시 뉴스데스크, 2004년 7월 7일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적 기록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잘못 사용한 사람 또는 기업의 책임인가. 여태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개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닌데 그 피해까지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민간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위한 편리한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취향까지 기업이 파악을 하고 그에 걸맞은 소비를 권하는 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한 개인의 존재를 위협하는 번호체계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남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축적된 정보(Data)로 감시(Surveillance)가 가능한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와 같은 가공할 위협을 야기하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II.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의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국가로부터 열세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⁵⁾ 이 번호는 개인 고유의 번호로 일생동안 '나'와 '남'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4)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피해사례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자로 태어난 심씨는 출생당시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만을 부여받았다고 한다. 그의 병적기록표와 호적등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어있거나 X자로 쓰여있다. 그는 주민등록없이 46년을 살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고 직장도 얻지 못해 오대산에서 야영생활을 하며 20여 년을 살았다. 흥미로운 것은 주민등록이 없어 학교진학은 거부당했는데, 징집영장이 나와 군복무를 했다는 점이다. 간첩의혹, 불심검문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심씨는 올 3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한겨레신문, 2005년 5월 25일자).

5)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름, 성별, 출생일, 혼인 중의 출생인지 아닌지, 부모의 성명과 본적,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출생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는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에 근거한다.

- 호적법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2. 자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기능을 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받은 번호이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국가처럼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등록제도는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공포·실시되면서 1962년에 등장했다. 거주자등록제도인 주민등록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가가 국민을 통제·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은 주민등록법의 목적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음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하고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⁶⁾ 즉, 주민등록법 제정 당시에는 공적부조 또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편익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거주관계 변동에 따른 행정업무, 즉 국가의 관리와 통제행위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이다.⁷⁾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적법 제130조(과태료) 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호적법 제131조(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주민등록법 제13조의2(호적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6) 주민등록법 제1조(1962년 5월 10일)

본 법은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주민등록법의 원형은 일본 식민지 시대였던 1942년에 제정된 ‘조선기류령(朝鮮奇留令)’으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보부설치법 → 반공법 → 기류법 → 주민등록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시 도구로서 주민등록제도의 특징은 주민등록법 개정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주민등록법은 제정 이래 13차례 개정 절차를 거쳤는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개정 절차를 거칠 때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명백하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민정권 출범 이후 표면적인 주민등록법의 강화는 줄어들 듯 보이지만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집적될 수 있고, 개인정보피해에 대한 노출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70여 개가 넘는 공적 영역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항목으로 들어있으며, 이는 정보 간 연결하는 ‘열쇠’로 이용된다.

1962년 5월 제정 당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1차 개정 때 시행령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나타났다.⁸⁾ 개인고유 일련번호체계인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명칭만 '주민'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열세 자리의 숫자로 작성'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모든 국민에게 번호가 주어진 이후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번호가 부여된다. 초기의 주민등록번호는 열두 자리로 지역을 나타내는 앞의 여섯 자리 숫자와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나타내는 뒤의 여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었다.⁹⁾ 그러다 1975년 8월 26일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을 표시하는 열세 자리 숫자 체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2조에 주민등록번호 작성에 관한 언급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의 여섯 자리와 성별·지역·등록순서 등을 나타내는 일곱 자리로 조합된다.¹⁰⁾

8)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삭제 <2001. 7. 1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9) 1968년 11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게는 각각 110101-100001과 110101-200002가 부여되었다(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18일자).

10)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급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비밀은 공개된 상태다. 일곱 번째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낸다. 1900년대 출생한 사람들 중 남자는 1, 여자는 2를,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는다.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의 성별 코드는 남자 9, 여자 0이다. 성별 코드 다음 네 자리의 숫자는 지역번호를 의미한다. 지역번호는 본적(고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신고를 한 지역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는 3천7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네 자리로 된 지역 코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행정자치부가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어 각 지역에 어떤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지역번호 다음에 있는 숫자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 신고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마지막 숫자는 '오류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해서 열두 개 숫자를 특정한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출

주민등록번호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개인이 하나의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준통일식별번호¹¹⁾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통일식별번호는 현대사회에서 행정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정리·종합한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여 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추적하여 악용할 소지도 있다.

개인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다른 정보들과 연동될 위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도 문제다. 즉,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 생년월일, 성별, 출생연대, 출신지역, 등재순위,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에 의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연령·성별 노출을 꺼리고 주민등록번호 요구 때마다 곤란함을 느끼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회원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필수 기재항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도 총 142가지 민원서류양식 중 모두 108가지 민원서류양식(76.06%)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식별번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국민을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조합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III.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

로텐버그(Rotenberg, 1998)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면, 이처럼 거래에서 상업적 가치를 빼내는 과정을 '개인정보의 상품화(commmodification of identity)'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상업적 이용'이라

하면 얻게 되는 숫자다. 국가가 공인한 주민등록번호 조합이 되려면 이 숫자가 주민등록 조합방법에 맞는 계산식에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임의로 열두 개의 번호를 넣고 마지막 번호만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에 맞는 숫자를 넣게 되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도 얼마든지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 1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통일식별표의 요건 중 유일성·영구성·보편성·유용성·필수성·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나, 간결성·전속성을 결하고 있다. 간결성이 부족한 이유는 천만 단위의 인구라면 여덟 자리 수로도 고유번호를 모두 부여할 수 있음에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열세 자리 수로 다소 길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번호 이외에 성별·생년월일·최초주민등록지 등을 번호에 나타냄으로써 전속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변재욱,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표준통일식별표로서 특징을 갖추고 있다.

함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은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여 이윤을 취하는 것, 민간기업에서 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고객관리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1. 식별정보로서의 주민등록번호

가. 실명확인

2003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448개의 업체 중 447개의 사이트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¹²⁾ 더군다나 입력된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실명확인도 실시한다. 이것은 곧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금융거래 내역이 없어 신용평가기관에 정보가 없는 사람, 행정상의 실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말소자, 신용불량자 등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인터넷 사용에서 배제된다.

기업들은 소비자 확대 측면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자사의 내용들을 이용하고 접하기를 원할 텐데, 굳이 복잡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회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덕분에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회원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정보를 통해 쉽게 검색·통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영역에 개방하기를 원한다.¹³⁾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실시하는 웹 사이트가 조사대상 사이트 중 68.7%(46개)를 차지했다. 실명확인제를 실시하는 곳 중 보험사 한 곳만이 주민등록번호 알고리즘 검사 방식을 택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이트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정보통신산업

12) 최근 나머지 한 곳도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이민영, 2004).

13) 한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해서 실명확인이 중요하다고 보고 신뢰성 높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기업이 실명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다. 이와 같은 요구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지 정보주체의 측면에서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실명확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회 등 외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 실명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민간기구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 관련 정보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인데, 국가가 구축한 정보를 기업에 넘기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직접 기업에게 주민등록정보를 전해줄 수는 없다.

현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은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명확인 은 국가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된다. 이 때 인터넷 기업들은 행정자치부를 통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한다.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넘겨준 정보들이 신용평가기관에 그대로 보관된 것이다. 우리나라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P신용평가기관의 경우, 4,000만 명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는 은행연합회의 금융권 자료¹⁴⁾와 국내 최대의 회원사(가전, 백화점, 의류업체, 자동차, 통신업체 등)의 비금융권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그리고 콜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추가하며 여러 포털 사이트 등과의 제휴를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확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종합신용정보기관으로 허가한 회사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업체들의 회원 실명확인 서비스¹⁵⁾를 하며 이익을 올리는 사기업

14) 신용정보법에도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등 일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간략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계약서류와 분리하고, 동의 여부를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삼을 수 없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많은 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지시를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동의의 경우에도, 신용정보 제공 대상 기관별로 따로 동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개인정보공유현황보고서』, 2003).

15) 월기본 이용건수에 따라 월기본료가 다르다(A, B, C형으로 나눔). 그 외 건당 30원의 충전식 요금제인 실명확인서비스 D형이 있다. P신용평가기관은 실명확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 중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다.¹⁶⁾

P신용평가기관은 실명확인을 통해 ① 비실명회원 방지와 관리비용 절감, ② 미성년자의 유해물 접근차단(성인 콘텐츠 사업 위해), ③ 온라인 상거래 사고방지 및 익명성에 대한 고객 보호, ④ 네티즌의 실명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유도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것은 회원관리 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실명확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이 인터넷 기업들에게 실명확인 서비스를 권유하는 제일 큰 이유는 '실명회원의 확보로 사이트 관리 편리 및 수익 사업용이'와 '허수 회원방지와 관리비용절감(이메일, 홈페이지, 포인트 적립, 리워딩서비스 등)'이다. 결국 인터넷 사업의 수익에 우선한 것이다. 실명인증 때문에 생기는 고객의 불편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은 염두에 두지도 않은 듯하다.

또 미성년자가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실명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비단 미성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정보노출을 꺼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든지,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노출되기를 가장 꺼리는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실한 개인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누출의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P신용평가기관은 명의도용센터를 운영하며 명의도용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터넷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도 지금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추가로 명의도용서비스를 개설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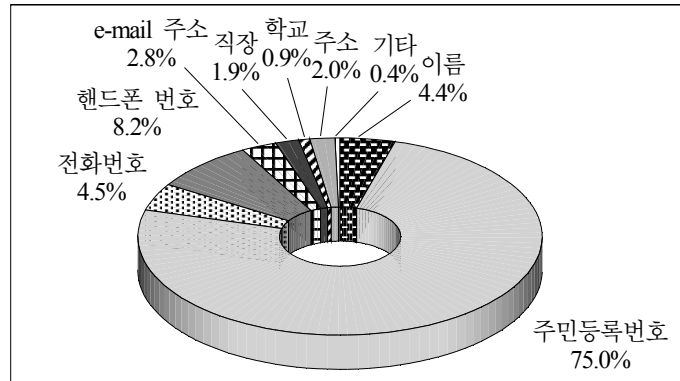
〈표 1〉 P신용평가기관에서 제시한 실명확인 이용요금표

구 분	실명확인서비스 A형	실명확인서비스 B형	실명확인서비스 C형
가입비	없음	없음	없음
월 기본료	30만원	15만원	10만원
월기본이용건수	10만건	2만건	5,000건
초과 건당 사용료	건당 10원	건당 20원	건당 20원

16) P신용평가기관에 근무하는 K씨는 인터뷰에서 “얼마인지 확실하 말씀은 못 드리지만(P신용평가기관의 전체 수익에서 실명확인으로 얻는 수익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림 1〕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취급하는 개인정보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

나. 실명확인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서비스는 위헌인가 합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용평가기관의 역할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은 상법상의 회사로 사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은 신용평가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회사이며,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실명확인을 함으로 이는 합법적이라고 본다. 게다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여 시스템 구축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적 이익 추구라고 여긴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의 실명확인 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헌법 제17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후 정통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약관을 마련해 두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명확인 은 헌법 제10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망과 사설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 확인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용정보업체들이 신용거래가 있는 국민을 중심으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또한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즉각적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없어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을 한다는 것은 곧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이용할 때 실명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헌재 1992. 6. 26. 90헌가23)이기도 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전검열금지, 알 권리 등을 강조하며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본권이다.

이처럼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 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정당한 법적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2. 연동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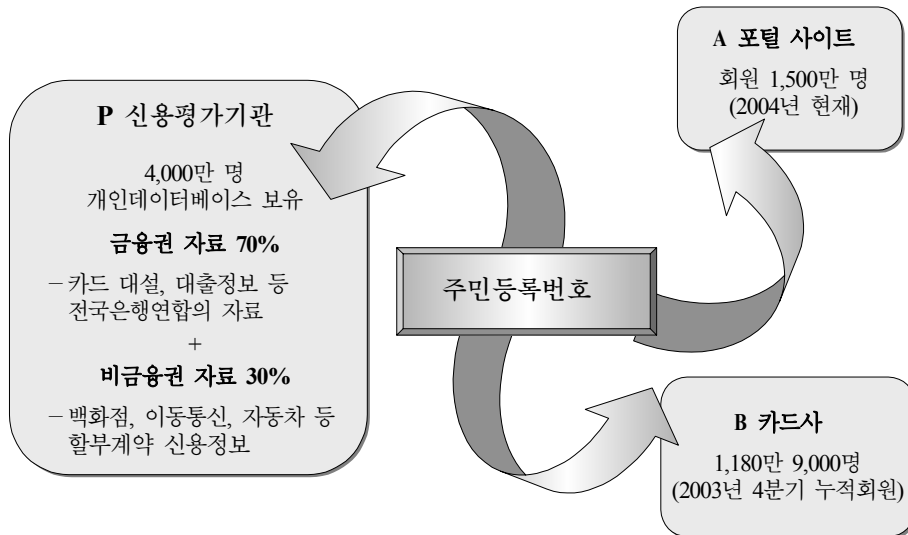
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정보 축적

주민등록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연동이다. 즉, 산재해 있던 개인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축적·수집·관리되는 것을 뜻한다.

민간영역의 각 기업들이 회원관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이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른 기업에 있는 특정 소비자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소비자의 정보관리도 수월해진다. 실례로 P신용평가기관, A포털 사이트, B카드사 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교환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형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A포털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P신용평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실명확인을 한다. P신용평가기관은 국내 최

초의 신용평가사로 모든 금융 및 상거래에서 제기되는 거래의 계약-집행-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정보, 개인정보, 관리서비스, e-Biz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P신용평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은행연합회의 금융권 자료와 백화점, 자동차, 통신업체 등의 비금융권에서 수집된 자료가 기본이 된다. 여기에 B카드사도 P신용평가기관의 회원사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2]에서 보듯이, A포털 사이트, B카드사, P신용평가기관의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연동사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이용하여 정보들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의 '열쇠'가 되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찌어 나가는 역할을 할 위험도 있다. 다음의 예시¹⁷⁾는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온라인을 통해 각종 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좌측 하단에는 [그림 3]과 같은 '자동차 보험료 실시간 비교 산출'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17)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보고하는 게시판에 게시된 사례를 재구성했다.
 (<http://blog.naver.com/kickthebaby/20007574801>)

(그림 3) 주민등록번호 입력창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더니, 잠시 후 (그림 4)에서 보듯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 모두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한 결과로 과거의 자동차 보험 등록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자동차의 번호까지 검색되었다.

(그림 4) 가입한 자동차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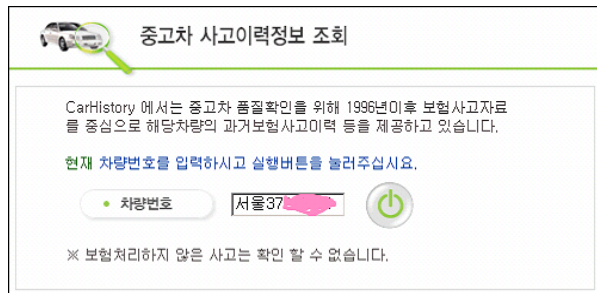
•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김영희**님의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시고자 할 경우 **현재 보유차량의 차량번호**를 클릭하세요.

성명	김영희	주민번호	66020	
차량번호	시작일	종료일	가입경력	가입보험사
서울37	2003-11-06	2004-11-06	0년	동양
서울37	2002-11-06	2003-11-06	0년	동양
서울37	2001-11-06	2002-11-06	0년	동양
서울37	2000-11-06	2001-11-06	0년	동양
서울4	2000-10-12	2000-10-12	0년	동양
서울4	1998-10-12	1999-10-12	7년	동양

또한 이 사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했는데 이름까지 검색되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주민등록번호만을 입력했는데 성명까지 검색되는 것은 너무 쉽게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I보험사의 웹 사이트를 살펴보니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보험개발원¹⁸⁾이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였다. 정

보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로 가자 ‘중고차사고 이력정보조회’ 서비스가 있었다. 이것을 클릭하자 (그림 5)와 같은 페이지가 나왔고, 앞에서 입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했다.

(그림 5) 차량번호 입력창



검색결과 중고차가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서비스로 건당 5천 원의 유료서비스였다. 그러나 이미 검색되었던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차량번호를 입력하자 (그림 6)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6)은 결제 직전에 나타난 화면이다. 자동차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자동차의 연식과 차종이 검색되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웹 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 ①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실명
- ② 소유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 ③ 소유자가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사의 종류
- ④ 과거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 ⑤ 자동차 번호
- ⑥ 현재 소유 자동차의 연식과 차종

18) 보험 개발원은 1983년 사단법인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로 시작하여 현재 국내 각종 보험과 관련한 요율 산출·검증·인가 등의 업무를 주요하게 하며 보험 상품의 개발, 각종 연구 및 데이터의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림 6]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이처럼 앞에서 살펴본 예시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웹 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었기 때문이며 보관이 철저하지 못하여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문제점도 제기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 주인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보연동에 대한 미약한 법적 근거

‘정통망법’ 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이 무색할 정도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등록의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주민등록법 제1조)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제7조 3항).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을 보면 이 제도는 행정상의 편익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만든 제도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주민등록제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사용되지만, 민간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법도 없고, 반대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도 없다.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개인정보를 민

간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편의에 의해 수시로 정보들이 이동하고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은 문제다.¹⁹⁾ 공공기관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도 문제인데 공공기관에서 구축해 놓은 정보가 사적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좌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의해 정리·관리된 정보들을 민간기관이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 정보공유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행정자치부가,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가 이원화되어있고, 정책에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에 따라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을 보유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신분등록 및 개인식별로 인한 편익을 가져다주는 점도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신원확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하나의 코드에 수록된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유출되고 만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고, 주민등록 정보의 수집·보관·관리·이용에 있어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하는 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통망법도 구체적이지 못하여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또한 처벌조항 정도가 약해서인지 정통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관련 소송분쟁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19)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국토정보센터, 외교통상부, 병무청, 해양수산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되어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다(약 4,760개의 국가기관이 총 388종 11,000여 개의 개인정보보유),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는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전(출)입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공공기관에 알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동사무소에 일단 신고를 하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해당인의 변경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윤현식, 2002).

IV.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응방안

1.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2조에서는 “누구도 그의 프라이버시와 가족, 집, 편지왕래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간섭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하여 공격받아서 안 된다. 그리고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침해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²⁰⁾와 국제연합(UN),²¹⁾ 유럽연합(EU)²²⁾ 등은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4년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을 처음 인정했는데,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한이 인간의 존중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내린 결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 OECD가 1980년 제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8원칙’은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의 8원칙은 ▲ 수집 제한, ▲ 정확성 확보, ▲ 구체성 명시, ▲ 이용 제한, ▲ 안정성 확보, ▲ 공개, ▲ 개인 참여, ▲ 책임의 원칙 등이다.

21) UN총회는 1940년대 중·후반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자동화된 정보처리가 사생활보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 UN총회는 ‘전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regulation of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는 ▲ 합법성과 공정성 원칙(Principle of Lawfulness and Fairness), ▲ 정확성의 원칙(Principle of Accuracy), ▲ 목적의 명확성의 원칙(Principle of the Purpose-specification), ▲ 해당 개인의 접근 원칙(Principle of Interested-person Access), ▲ 비차별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 예외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관(Power to make Exceptions), ▲ 안전원칙(Principle of Security), ▲ 감독과 제재(Supervision and Sanctions), ▲ 국경없는 정보흐름(Transborder Data Flows), ▲ 적용범위(Field of Application)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박광진,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오용 대책』, 김주환 외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22) EU도 1997년 수집 목적의 제한성과 합법성, 자료의 질적 관리·보안,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지침을 마련했다. EU는 회원국들이 이 원칙에 따라 자국의 프라이버시법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EU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는 개인자료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기본권으로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에서 정보보호관련 근원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민간기업에게 실명확인을 해 주는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외국 여러 나라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이러한 주민등록정보를 민간영역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법률적 제재가 없는바 이에 대한 법제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 먼저 공공 영역의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민간 영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일반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학원·항공·여객·숙박 등 몇몇 제한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한계가 많다. 또한, 이 법은 목적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라는 서로 다른 문제들을 하나로 엮고 있어서 일반법으로 기능하기에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의료관련법', '전자상거래및금융거래관련법' 등이 있다. 그 외에 분야별 법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안)' 등이 제정되어 있거나 혹은 준비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PC통신·인터넷서비스기본약관', '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등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들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1999년 2월에 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여러 한계를 갖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각 개인정보들을 연결시켜 주는 열쇠 역할을 하며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언급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구축해 놓은 정보를 민간기관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이 때문에 정보주체들이 자기정보결정권과 더 나아가 기본권까지 침해받게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민간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와 정보주체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이다.²³⁾ 전자 상거래를 할 때에나 각종 개인정보 관련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이 기술이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역기능도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세 건이나 발의돼 있다.²⁴⁾ 그러나 각각의 법안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자치부에,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에 맡기자는 의견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를 정부부처가 관리하게 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관리하는 행자부는 개인정보 침해자이면서 동시에 처벌자가 되고, 정보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활성화와 보호 정책을 함께 펴는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주·수단·방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본인 확인용으로 제한하고,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등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23)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난 7~8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도록 민간업체들에게 권고했다(연합뉴스, 2004. 3. 23.). 또한 행정자치부는 목욕탕, 이발소 등 영업장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인·허가증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4. 4. 14.). 이는 정부 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4)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와 함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독자적으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고,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보주체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법으로 채택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기술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완전하게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프라이버시 추출 기술(~PET: Privacy Extracting Technology)’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익명 혹은 유사 익명으로 진행되는 지불(대금결제), 통신, 웹 접근기술처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PET)은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의 보장이나 법적 안전장치 없이 개인정보의 노출을 촉진하는 기술적 틀을 만드는 프라이버시 추출 기술(~PET)은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면서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⁵⁾

보다 발달된 기술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도 그것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수집된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혹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지문과의 일치여부로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을 구상하여 일부 동사무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확실한 신원확인을 위해 손등정맥, 지문, 홍채 등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완전한 보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문은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달라 식별정보로 우수하다고 하지만, 젤라틴 소재로 만든 지문은 지문인식기계가 손가락의 지문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술 역시 허점이 있다.

25) 예를 들어, 명의도용을 막아준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웹 사이트들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금융거래정보를 갖고 있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실시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다른 개인정보의 수집·관리·통합이자 처음 수집목적을 넘어서서 정보를 남용하고 있는 사례다.

이처럼 기술도 완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술적인 발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공허하게 들린다. 예를 들어, 실명확인을 주장하는 의견 중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네티즌들 사이에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이 감소하여 책임 있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명 토론방이나 비실명 토론방이나 토론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실명 토론방에는 참석자가 비실명 토론방에 비해 훨씬 적어 많은 사람들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대의에서 멀어진 감이 없지 않다.

실명확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명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유명 웹 사이트²⁶⁾는 물론 일부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 없이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느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전문교육방송 인터넷 사이트인 H방송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키자 기존 회원관리 체계를 바꾸었다. H방송의 개인정보 담당자 J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다 보니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이 회원의 중복가입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J씨는 “허위 가입자는 전체의 10%로 추정하고 있고,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고 밝혔다. 결제문제도 공인인증서나 각 카드사마다 인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해당 사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를 일단 서버에 보관해 두면, 아무리 보안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하더라도 완전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안기술을 철저히 하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예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법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V. 결 론: 정보주체로 거듭나기

태어날 때부터 열 세 자리의 번호를 부여받았고, 일상생활에서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26) 이들 사이트들은 실명확인 절차 등이 없이도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보통 사이트는 많아야 4대 기본정보로 불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하는데 이 네 정보가 겹치는 사람은 지구촌 60억 명 가운데 한 명 나을까 말까한다고 한다.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우리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인식하는 듯하다. 각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라는 점도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번호, 사회보장번호 등과 다른 점이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만든 제도인 주민등록번호를 공적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비자들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더 크다. 또한 집적된 정보에 의해 소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데이터베일런스'의 위협도 강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의 유출이나 남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보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자로서의 권리는커녕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책임까지 떠맡아야하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초기부터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로 시작되었고, 번호 자체에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지만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용형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간영역에서의 사용은 그 범위를 제한하고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민간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을 더욱 우려하는 이유는 그 피해가 크고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시장의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수집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그 기술들이 정보주체자의 인격이나 기본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좇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자본의 논리에 따라 개인정보기술도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부유한 이들은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고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도 기업의 손에 맡겨두면 시장논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업도 효율적인 소비자 관리로 이익을 얻고, 소비자들도 편리한 제품구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당장 나타나는 즉각적인 것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이다. 앞으로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집적되면 한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엄격히 규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 구축과 기술발전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장의 효율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정보권을 포기한다면 결국 자신의 생존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 번 잃은 기본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훗날 몇 배의 수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기중(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발표문』.
- [2] _____(2000). 권력의 감시와 통제: 한국의 현실.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토론회 자료집』. 진보네트워크센터.
- [3] _____(2002).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지문날인 반대연대 토론회 자료집』.
- [4] 김동노·하승창·김영홍·최인욱(2003).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5] 김일환(2004).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네트워크 10월호, 2004년 16호, 진보네트워크
- [6] 김주환 외(2001).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서울: 나남.
- [7] 변재욱(1999).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8] 서지원(1998). 『프라이버시와 국가신분증 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윤현식(2002).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이민영(2004). 주민등록번호 남용억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보통신정책』. 제16권 8호 통권 346호.
- [11] 이인호(2003). 프라이버시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함께하는 시민행동 연속 워크숍, 제2회 프라이버시 감독체계의 개선방안 모색 자료집』.
- [12] 이은우(2004).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

- 단체 개정안 토론회. 지문날인반대연대.
- [13] 장종인(2005). 『개인 감시의 확장: 주민등록번호의 상업적 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3). 2003년도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
- [15] Agre, Philip E. & Rotenberg, Marc(1998). Technology and Privacy: The New Landscap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16] Branscomb, Anne W.(1994). Who Owns Information?: From Privacy to Public Access. NY: Basic Books.
- [17] Garfinkel, Simson(2000). Database Nation. O'Reilly & Associate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역(2001). 『데이터베이스 제국』. 서울: 한빛미디어.
- [18] Lyon, David(1994).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Basil Blackwell.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역(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19] Shapiro, Andrew L.(1999). The Control Revolution. 김명준 옮김(2001). 『테크놀러지와 통제혁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20] Whitaker, Reg(1999). The End of Privacy. NY: The New Press. 이명균·노명현 역(2001). 『개인의 죽음』. 서울: 생각의 나무.
- [21]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22]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23]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프라이버시센터 <http://www.privacy.or.kr>
- [24]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ttp://www.epic.org>
- [25] 연합뉴스, 2004년 3월 23일자.
- [26] 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18일자.
- [27] _____, 2005년 3월 5일자.
- [28] _____, 2005년 5월 25일자.
- [29]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4년 4월 14일자.
- [30] MBC 9시 뉴스데스크, 2004년 7월 7일자.